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서울사무소)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SEOUL OFFICE)

COMPLAINT TRANSMITTAL COVERSHEET
(조정신청서 전송문 표지)

첨부된 내용은 귀하를 상대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에 제출된 신청서로,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1999년 10월 24일 채택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이하 "정책"이라 함), 2013년 9월 28일 ICANN 이사회에서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2023년 8월 21일 개정된 ADNDRC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이라 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기 분쟁해결규정은 ICANN에서 인가한 도메인등록업체와 귀하가 체결한 등록계약서(약관)안에 포함된 것으로, 상기 규정에 따라 귀하는 제3자(신청인)가 귀하의 도메인이름과 관련해 분쟁 해결 서비스 제공 기관인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강제력 및 구속력을 지닌 절차 진행에 따르고 절차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본 표지와 함께 문서로 송부하는 신청서에서 신청인 성명, 연락 정보 및 분쟁도메인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분쟁해결규정, 규칙 및 보충규칙에 따라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ADNDRC에서 발송한 서면통지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일 필요하시다면, 절차진행 시 귀하를 대리할 법률 대리인 또는 기타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ICANN 정책: <http://www.icann.org/en/help/dndr/udrp/policy>
- ICANN 규칙: <http://www.icann.org/en/help/dndr/udrp/rules>
- ADNDRC 보충 규칙과 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기타 정보: <http://www.adndrc.org>

혹은 ADNDRC의 서울사무소에 연락하면 상기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82) 61-820-1550
 팩스: (82) 61-820-2611
 이메일: kidrc@adndrc.org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서울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은 본 조정 신청서를 ADNDRC에 제출함으로써, 정책, 절차규칙 및 보충 규칙을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의무를 다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에 따른 신청서

본 양식은 1999년 10월 24일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Names and Numbers)가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이하 "정책")과 2013년 9월 28일 ICANN의 이사회에서 승인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칙(이하 "규칙"), 그리고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시아도메인 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의 보충규칙(이하 "보충규칙")에 따릅니다.

절차를 주관할 ADNDRC 사무소 선택

조정 신청인은 이로써 본 신청서에 언급된 도메인이름 분쟁 절차를 주관할 기관으로 ADNDRC의 서울사무소를 선택하는 바입니다.

1. 분쟁 대상 도메인이름(들) (전체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기록난이 부족할 경우, 별도의 A4 용지에 동일 양식으로 작성하여 첨부 바랍니다.)

- | | | |
|----------|----------|----------|
| 1. _____ | 2. _____ | 3. _____ |
| 4. _____ | 5. _____ | 6. _____ |
| 7. _____ | 8. _____ | 9. _____ |

2.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등록 기관의 명칭과 자세한 연락처를 기재하십시오.

3. 당사자 세부 사항 (신청인이 한 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의 A4 용지에 각자의 세부 연락처를 기록하고 어느 도메인 주소와 관련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표기바랍니다. 피 신청인이 한 명 이상일 경우 별도로 양식 C를 사용해 주십시오.)

신청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법적 지위 _____

사업자 등록 장소 _____

주 사업 장소 _____

위임 받은 대리인 (있는 경우에 한함)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피 신청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법적 지위 _____

사업자 등록 장소 _____

주 사업 장소 _____

위임 받은 대리인 (있는 경우에 한함)

성명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팩스 _____

Email _____

4. 신청인의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성함

연락정보

전 화: _____

전자우편: _____

5.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회사를 피 신청인으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본 신청서에 데이터베이스 검색 사본을 첨부하십시오.)

6. 본 소송의 대상인 도메인이름과 관련하여 달리 법률 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종료된 적이 있는지 여부를 기록 바랍니다. (근거 서류를 첨부하십시오.)

7. 조정 신청 이유 (조정 신청서가 근거로 한 상표나 서비스 마크를 명기하고, 현재 이러한 상표나 서비스 마크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각각 기술하십시오. 가능하다면, 등록 증명서 사본들을 첨부하십시오.)

8. 조정을 신청하게 된 사실적 근거와 법률적 근거를 간략하게 요약하십시오.

UDRP 제4조 (a)항목에서는 본 행정절차에 적용 가능한 도메인이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함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i) 피신청인이 등록한 도메인이름이 신청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나 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야기할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피신청인이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해 아무런 권리나 적법한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

iii) 피신청인이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고 있다는 것

9. 원하는 구제 방안 (*하나를 선택하고 삭제)

신청인은 분쟁대상도메인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라" 또는 "말소하라"할 것을 요청합니다.

10. 신청인은 본 조정 신청에서 1인 / 3인 조정부를 선임합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삭제)

11. 제안할 3명의 조정인이 있는 경우, 명단과 자세한 연락 정보를 기재하십시오.

- 1. _____
- 2. _____

3. _____

12. 해당 도메인이름(들)에 대해 이전 또는 말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해 최소한 하나의 상호 재판관할을 선택해 주십시오.(상자 안에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 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 분쟁조정신청시 등록기관의 후이즈 정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등록인의 주소지
- 등록기관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및 분쟁조정신청시 등록기관의 후이즈 정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등록인의 주소지

13. ICANN 정책에 의거한 등록약관 (등록기관의 등록약관, 본 신청서에 사본을 첨부바랍니다.)

14. 본 건과 관련된 기타 세부 사항

15. 추가 정보

- (i) 본 신청서의 내용을 입증하는 모든 서류와 서류 색인 목록을 첨부하십시오.
- (ii) 모든 도메인이름이 동일한 사람에 의해 등록되었을 경우에는 본 신청서가 하나 이상의 도메인이름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iii) 본 신청 서류는 규칙에 따라 전자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ADNDRC 서울사무소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5층(우편번호 58324)

전화: (82-61) 820 1550
팩스: (82-61) 820 2611
이메일: kidrc@adndrc.org

(iv)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5조(c)항과 보충 규칙 제15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입하십시오.

(v) 본 서류를 작성할 때는 다음 문서들을 참조 하십시오: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DRP)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을 위한 절차규칙(UDRP Rules)
-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에 대한 ADNDRC의 보충 규칙

(vi) 어느 일방이 발신하는 모든 통신 사본은 상대방과 ADNDRC 서울사무소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16. 확인서

아래 신청인은 도메인이름 등록에 관한 주장과 구제 대책 또는 분쟁 해결이 오로지 도메인이름을 보유한 회사만을 상대로 한 것이며, 모든 주장과 구제 방안이, 의도적인 악행이 없는 한, (a) ADNDRC이나 그 사무소 또는 조정부, (b) 등록 기관, (c) 등록업무 행정 담당자, (d)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및 동 기구의 임원, 직원, 고용인, 및 대리점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래 신청인은 본 조정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것이고, 타인에 해를 끼치는 등의 부적절한 의도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주장은 규칙과 해당 법률에 비추어 정당할 뿐 아니라, 신의와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한 것임을 정히 확인하는 바입니다.

서명: _____ 일자: _____

서명자 성명 및 직책(활자체로 기입): _____